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낚시어 선업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11월 4일

삼 척 시 장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 항,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,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은 낚시어선업자(이하 "낚시어선업자"라 한다), 선원 및 낚시어선의 이용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영업시간)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낚시어선(이하 "낚시어선"이라한다)의 영업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.

제4조(영업구역)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강원도 관할수역 해안선으로부터 연안 12마일이내 수역으로 한다. 단, 선외기를 설치한 낚시어선은 연안 7마일이내 수역으로 한다.

제5조(안전운항 준수사항 등) ①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제한 및 통제구역으로 승객을 안내하지 말아야 한다.
- 2.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갯바위 및 간출암 등에 승객을 하선시키는 행위를 금한다.
- 3. 충돌, 좌초 또는 그 밖에 승객의 위급한 상황 및 해상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, 인명구조 활

동 등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4. 출항 전 항해·통신·기관·추진 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 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.
- 5. 출항 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 전원에게 영업 종료 시까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승객이 출항 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.
- 6. 낚시어선업자·선원은 승선하려는 낚시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명 부의 기재내용을 확인·유지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 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② 낚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한다.
- 2.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.
- 3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안전운항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금한다.
- 4. 불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5. 바다에 유류, 분뇨,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를 금한다.
- 6. 낚시어선에 승선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 전원은 안전 확보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7.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'승선자 명부'작성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,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에게 정확한 작 성을 요구하고, 허위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
- 8. 낚시승객은 선상에서 낚시 중 기상악화 예견 등으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안전대피를 위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9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0. 승선자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신분증제시 요구를 거부하여 서는 아니 된다.
- 제6조(기타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를 하고자 승선하는 승객에 대하여 출항 전에 준수사항을 교육시킨 후 출항 하여야 한다.
-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른 시·군·구의 관할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·군수가 정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삼척시 고시 제2016-89호(2016.7.20.) 는 폐지한다.